## KOSHA GUIDE

C - 91 - 2015

- (2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.
  - (가)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
  - (나) 화재종합방재실 설치 계획
  - (다)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시설의 설치, 피난유도 계획
  - (라) 공사진행 단계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
  - (마) 화재경보 및 비상경보 체계 구축 계획
  - (바) 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·사용·저장 등의 관리 계획
  - (사) 화재 대비 교육 및 훈련 계획
  - (아) 화재발생 상황 보고, 신고, 전파 등에 관한 사항
  - (자) 화재 유형별 대응체제
- (3) 토목, 건축, 전기, 기계, 통신 등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(각 분야별 팀장으로서 이하 "각 분야별 관리감독자"라 한다)는 각 분야별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이외의 재료의 현장 투입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의 반입예정시기를 목록화하여 안전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각 분야별 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 물질의 운반·사용·저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를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5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종합방재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종합방재 실장을 지정하고 실장으로 하여금 방재설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.

## 5. 예방 및 대비

## 5.1 소방시설의 설치